



#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(참조)

제 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

1. 전세연 제2023-77호 (2023.8.22.)와 관련입니다.

2. “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할

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”을 골자로 하는

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일부개정법률이 공포 및 시행('24.2.17)되었음을 알려드리

오니,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 : 전자관보 1부. [끝]

※ 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[www.tourbus.or.kr](http://www.tourbus.or.kr)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

과 장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이사장  
(전결)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3- 161호 ( 2023.08.23 ) 접수 ( )  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  
전화 02-422-0019 전승 02-418-0071 /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